

「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물놀이장을 타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레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운영기간, 이용시간 변경(안 제5조)
- 타 조례 제명 변경 반영(안 제15조)
- 물놀이장 타용도 이용 신설(안 제18조)
- 입장료 변경(안 별표 3)
- 입장료 감면대상 변경(안 별표4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
「구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

○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○ 합 의 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변경하고 물놀이장을 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물놀이장으로만 이용 지정된 것을 타용도로 이용함에 따라 활용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레저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